

네이버·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

본 규정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(이하 '뉴스제휴평가위')가 주식회사 네이버(이하 '네이버'라 한다)와 주식회사 카카오(이하 '카카오'라 하며, '네이버'와 '카카오' 양사를 지칭할 때는 '포털사'라 한다)로부터 위임 받은 양사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위한 평가활동 지침으로,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'포털사'의 뉴스제휴에 대해 아래 각 항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뉴스제휴 및 제재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,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① '포털사'의 뉴스 제휴 매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평가 등 제반 사항. 대상 및 평가 절차, 평가 방식, 평가 요소 등이 포함된다.
- ② '포털사' 제휴 매체들의 부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제반 사항. 부정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조치,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식 등이 포함된다.

제2조 (운영원칙)

- ① '뉴스제휴평가위'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과 관련, 언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'뉴스제휴평가위'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'뉴스제휴평가위'는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,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‘제휴매체’는 ‘뉴스검색제휴’나 ‘뉴스콘텐츠제휴’, ‘뉴스스탠드제휴’를 하고 있는 언론매체를 말한다.
- ② ‘뉴스검색제휴’란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 없이 아웃링크(out-link) 방식으로 ‘포털사’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③ ‘뉴스콘텐츠제휴’란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에 기반하여 인링크(in-link) 방식으로 ‘포털사’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④ ‘뉴스스탠드제휴’란 서비스 내 집행되는 광고수익의 금전적 제공을 기반으로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된 언론사의 뉴스정보를 아웃링크(out-link) 방식으로 ‘네이버’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⑤ ‘제 1소위’란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의미한다.
- ⑥ ‘제 2소위’란 뉴스 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의미한다.

제4조 (제휴 영역)

‘포털사’의 뉴스제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(가) ‘뉴스검색제휴’
- (나) ‘뉴스콘텐츠제휴’
- (다) ‘뉴스스탠드제휴’

제5조 (제휴 대상)

제휴 대상은 신문사업자, 정기간행물사업자, 방송사업자, 인터넷신문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.

제6조 (제휴 요건)

‘포털사’의 ‘제휴매체’가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
- ① 신문사업자, 정기간행물사업자, 방송사업자, 인터넷신문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·허가를 받은 후 일(1)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된 이후 일(1)년이 지난 매체
- ② <별표 1>에서 규정한 ‘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량’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
- ③ 전송 안전성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한 매체
- ④ ‘뉴스콘텐츠제휴’ 및 ‘뉴스스탠드제휴’의 경우 ‘포털사’에 ‘뉴스검색제휴’ ‘매체사’로 등록된 후 육(6)개월이 지난 매체

제7조 (제휴 단위)

‘포털사’의 제휴영역 및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제휴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제휴 단위는 매체로 한다.
- ② 포털과 제 3조에 따른 제휴대상 사업자 간의 제휴는 일사일매체(一社一媒體)와 일사다매체(一社多媒體) 모두 가능하다.
- ③ 제휴승계
 - (가) ‘제휴매체’로서 유관법령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제휴 계약 당시 제휴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지 않는 한 ‘제휴매체’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.
 - (나) ‘포털사’는 제 3항 (가)호의 경우로써 사업자의 카테고리(뉴스콘텐츠영역) 변경이나 확장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8조 (제휴신청)

뉴스제휴 신청은 현행과 같이 ‘포털사’의 안내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, 구비서류는 아

래와 같다. 제휴 신청 및 평가 과정은 <별표 2>에 따른다.

- ① 구비서류 : 신문사업자, 정기간행물사업자, 방송사업자, 인터넷신문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증이나 허가증과 <별표 3>의 매체소개서
- ② 매체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은 제휴 정성평가에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A4 용지 3장 분량 (자간 160% / 10pt) 으로 제한한다.

제9조 (제휴 신청 주기 및 평가 주기)

- ① ‘뉴스검색제휴’ 매 년 이(2)회 접수한다.
- ② ‘뉴스콘텐츠제휴’ 매 년 일(1)회 접수한다.
- ③ ‘네이버’의 ‘뉴스스탠드제휴’는 매 년 일(1)회 접수한다.
- ④ ‘뉴스검색제휴’ 및 ‘뉴스스탠드제휴’의 경우 재평가 주기는 일(1)년으로 한다. ‘뉴스콘텐츠제휴’의 재평가는 ‘뉴스제휴평가위’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할 수 있다.
- ⑤ 본 규정 제 15조 1항 (마)호에 따라 계약해지 조치된 ‘제휴매체’는 계약해지 일로부터 일(1)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다.
- ⑥ 제휴 형태별 신청 및 평가주기는 <별표 4>와 같다.

제10조 (평가 방법)

- ① ‘뉴스제휴평가위’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. 최종 제휴 여부는 15개 단체 추천 제휴평가위원 1명씩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.
- ② 평가항목은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고 정량평가에 40% 정성평가에 60% 배점이 되도록 한다. 정량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<별표 5>에 따르고, 정성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<별표 6>에 따른다.

- ③ 뉴스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정한 최소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.
 - (가) ‘뉴스검색제휴’ :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 - (나) ‘뉴스스탠드제휴’ :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
 - (다) ‘뉴스콘텐츠제휴’ :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
- ④ 최종 평가점수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, 산술평균 한다. 동일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복수로 있는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.
- ⑤ 정성평가의 3개 상위 평가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영역에서 평가위원의 과반수로부터 최저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해당 매체는 총점과 상관 없이 제휴 대상에서 제외된다. 항목별 최저 점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10점, 윤리적 요소 10점, 수용자 요소 4점으로 한다.
- ⑥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.

제11조 (‘제휴매체’ 제공 콘텐츠 모니터링)

- ① ‘뉴스제휴평가위’는 제 15조에 명시된 부정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직접 모니터링 및 이용자 신고를 기초로 한 간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- ② 직접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준에 의해 설계된 알고리즘 또는 모니터링 요원이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.
- ③ 간접 모니터링은 이용자들이 신고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행한다.
- ④ ‘뉴스제휴평가위’는 직접 모니터링 및 간접 모니터링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. 또 평가위원은 위반 의심 사례를 인지한 경우 ‘포털사’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‘포털사’는 그 결과를 정기/수시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.

제12조 (모니터링의 위탁)

‘뉴스제휴평가위’는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‘포털사’에 위탁할 수 있다. 위탁 받은 ‘포털사’는 ‘제휴매체’들의 송고 기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, 월 일(1)회 모니터링 보고서를 ‘뉴스제휴평가위’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 (모니터링결과에 따른 평가)

- ① ‘뉴스제휴평가위’는 제 12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를 위하여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다.
- ② 정기평가는 매월 일(1)회 실시한다.
- ③ 수시평가는 ‘뉴스제휴평가위’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요청 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칠(7)일 이내에 실시한다.

제14조 (부정행위 등)

- ①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 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대상 행위(이하 ‘부정행위’)로 본다. 부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평가기준은 <별표 7>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- (가) 중복·반복 기사 전송
 - (나)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
 - (다) 관련뉴스·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
 - (라) 기사로 위장된 광고, 홍보
 - (마) 선정적 기사 및 광고
 - (바)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

- (사)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(제 3자 기사 전송)
- (아)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
- (자)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
- (차)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

② 다음 각호의 경우를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사유로 인해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(이하 '접속불량')으로 본다.

- (가) 악성코드가 탐지 : '제휴매체' 페이지로 이동 시 브라우저 또는 디바이스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 등에 의해 악성코드가 탐지 되는 경우를 말한다.
- (나) 데드 링크 : 악성 코드 등으로 인해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.
- (다) 기타 접속 불량 : ActiveX 등 이용자 동의, 유료정보, 성인인증 등 로그인 이 필요한 콘텐츠가 열리는 경우를 말한다.

제15조 ('제휴매체' 관련 조치의 권고)

① 모니터링결과에 따라 제휴평가위가 네이버, 카카오에 권고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. 상세규정은 <별표 8>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- (가) 시정요청
 - (ㄱ)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
 - (ㄴ) '접속불량'이 발생한 경우
 - (ㄷ) 위 경우 <별표 8>에서 정한 벌점을 부여한다.
- (나) 경고처분
 - (ㄱ) 일(1)개월 이내에 10점 이상 벌점을 받는 경우
 - (ㄴ) 12개월 이내에 누적된 벌점이 30점에 이르는 경우

- (다) ‘포털사’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
 - (ㄱ) 경고처분을 받은 ‘제휴매체’가 기간에 상관 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받는 경우
 - (라) ‘포털사’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
 - (ㄱ) ‘포털사’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처분을 받은 ‘제휴매체’가 기간에 상관 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받는 경우
 - (마) 계약해지
 - (ㄱ) 12개월 이내에 ‘포털사’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처분을 받은 ‘제휴매체’가 기간에 상관 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받는 경우
 - (ㄴ) ‘접속불량’ 중 악성코드 탐지가 발생하여 ‘포털사’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
 - (ㄷ) ‘접속불량’ 중 데드링크 상태가 발생하여 ‘포털사’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데드링크 상태가 삼(3)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
- ② ‘뉴스제휴평가위’는 권고할 조치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부정행위 등이 이용자나 언론 전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, 전체 기사 중 부정행위의 비율, 매체사의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제 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라도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,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 제 2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을 권고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‘제 2소위’ 위원 1/3 이상이 발의하고, 발의된 사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출석위원 2/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.

제16조 (의견청취)

‘뉴스제휴평가위’는 필요한 경우 제 15조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조치 대상 ‘제휴매체’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7조 (제재 심의 의결 절차)

본 규정에 의한 '뉴스제휴평가위'의 회의는 '네이버-카카오 '뉴스제휴평가위' 위원 회의 규정'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단, '매체사'에 제 15조 1항 (나) 내지 (마)호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'제 2소위' 위원 15명 중 출석위원 2/3 이상 찬성할 경우로 정한다.

제18조 ('포털사'에 대한 권고 등)

- ① '포털사'는 본 규정에 의거한 '뉴스제휴평가위'의 결정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. 양사는 기술적 이유 등으로 평가위 결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- ② '포털사'는 '뉴스제휴평가위'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한 자료를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.
- ③ '포털사'는 평가업무의 실효성을 위해 이용자가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, 평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위에 제출해야 한다. 평가위는 필요 시 별도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 19 조 (경고 처분 대외 공표)

'뉴스평가위원회'는 '제휴매체'의 자정 노력을 위하여 제 15조 1항에 따라 경고처분 이상 조치된 건에 대한 부정행위 및 처분 내용을 적절한 방법(서비스 공지사항 등)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. 이 경우 '제휴매체' 이름은 노출하지 않는다.

부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 00시부터 시행한다.

※ 별표 목록

<별표 1>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량 비율

<별표 2> 제휴 평가 절차

<별표 3> 매체 소개서

<별첨 4> 제휴 형태별 평가 주기

<별표 5> 정량평가

<별표 6> 정성평가

<별표 7> 부정행위의 유형

<별표 8> 제재기준

<별표 9> 선정성 판단 정책

<별표 1>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

분류	기사 생산량	자체 기사 비율
일간지	매월 200건 이상	30% 이상
주간지	매월 50건 이상	40% 이상
월간지	매월 20건 이상	50% 이상
인터넷신문	매월 100건 이상	30% 이상
전문지	매월 50건 이상	40% 이상
방송사	매월 200건 이상	30% 이상

<별표 2> 제휴 평가 절차

분류	내용
온라인 신청	- 제휴 영역에 상관 없이 한 달 전 제휴 신청 페이지 오픈 * 구비서류 : 신문사업자, 정기간행물사업자, 방송사업자, 인터넷신문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증 / 매체소개서 (A4 3장 분량 / 자간 160% / 10pt) 으로 제한)
제휴평가	- 평가 기간 : '뉴스검색제휴': 제휴접수 마감으로부터 최소 4주, 최장 6주 '뉴스콘텐츠제휴', '뉴스스탠드제휴': 제휴접수 마감으로부터 최소 4주, 최장 6주 - 평가 방법 :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
제휴 여부 결정	- 안내 : 평가 후 제휴 여부에 대해 각 '포털사' 개별 안내

‘제휴매체’ 등록 진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 : 계약 및 기사 전송 관련 기술적 작업 - ‘포털사’ 계약 기준 및 기술 정책에 따름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별표 3> 매체 소개서

분류	내용
회사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설립일자, 등록번호, 회사연혁, 사업장 소재지, 연락처, 도메인, 취재 및 편집 인력 현황, 조직도
윤리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 윤리와 관련한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과 실천 활동 • 언론사의 지향 가치, 철학 • 위 가치를 실천한 기사 사례와 관련한 구체적 자료
서비스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체 서비스 트래픽 (UV / PV / 체류시간 등) • 매체 혹은 콘텐츠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
콘텐츠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사 생산 현황 (전체 생산량 / 자체 기사 비율) • 특종(단독보도)과 대외적 수상 실적

<별표 4> 제휴 형태별 신청 및 평가주기

제휴영역	네이버			카카오	
	‘뉴스 검색제휴’	‘뉴스콘텐츠제휴’		‘뉴스검색제휴’	‘뉴스콘텐츠제휴’
서비스	뉴스 검색	뉴스 스탠드	네이버 뉴스	뉴스 검색	다음 뉴스
신청 및 평가주기	6개월	12개월		6개월	12개월

<별표 5> 정량평가

구분	점수	항목	내용
제휴 통과 기준	통과 시 기본점수 30점 부 여	발행 기간	· 신문사업자, 정기간행물사업자, 방송사업자, 인터넷 신문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최소 일(1)년 이상 된 매체
		기사 생산량 (생산 지속력)	· 매체 발행 주기별로 최소 기사량 충족 요건 - 일간지 월 200건 이상 - 주간지 월 50건 이상 - 월간지 월 20건 이상 - 인터넷신문 월 100건 이상 - 전문지 월 50건 이상 - 방송사 월 200건 이상
		자체기사	· 자체기사 - 자체 기사는 통신기사나 타매체 기사를 제외하고 신청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, 생산한 뉴스를 의미한다. 여기에는 기사뿐 아니라 칼럼, 동영상, 만평, 그래픽 등 독자적 뉴스 가치가 있는 콘텐츠가 모두 포함된다. 통신기사나 타 언론 기사를 부분 수정해 사실상 표절한 기사나 작성자가 표시되지 않은 무기명 기사는 제외한다.

			- 일간지 및 방송사, 인터넷신문 30% 이상 주간지 및 전문지 40% 이상 월간지 50% 이상 ※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본 매체의 기사도 자체기사에 포함
		기술적 안정성	· 전송 안전성 등 기술적 안정성
독자적 기사 생산 능력	최대 10점	자체 생산 기사 비율	· 각 매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체 기사 비율을 감안해 5단계로 평가

<별표 6> 정성평가

	점수	항목	내용
저널리즘 품질요소	25점	가치성/수행성 (5점)	· 설립 취지, 언론사로서 보도방향과 비전, 원칙 등 · 설립 후 보도 활동과 성과
		시의성/중요성 (5점)	· 뉴스가치가 있는 기사를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· 뉴스의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· 사회 구성원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슈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·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
		정확성/완전성 (5점)	· 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· 기사의 출처와 취재원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는지 · 기사에 나오는 사실과 자료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· 기사가 관련된 사실들을 충분히 다루고 포괄적으로 보도하는지

윤리적 요소	25점	전문성/ 심층성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매체가 다루는 분야에 대한 뉴스 내용의 전문성이 충분한지 · 해당 분야에서 다른 매체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기사를 제공하는지 · 독자적으로 취재, 생산하는 기획성 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· 기사의 내용이 충분히 깊이가 있거나 심층적인지
		공정성/ 균형성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사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· 기사의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·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지는 않는지 · 의도적으로 편향적이거나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지
		실천의지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 윤리 준수를 서약하거나 대외적으로 표방하고, 이를 실천 하는지
		권익침해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· 공익과 무관한 보도로 사생활 침해하는지 · 어뷰징에 해당하는 기사를 생산하는지
		광고윤리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편집, 배열하는지 · 기사 중간에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을 포함하는지 ·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기사 내용을 담고 있는지 · 의료, 부동산, 주식, 식품광고 등 유해성이 높은 광고를 게재할 때,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지
		선정성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업적 목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하거나 강조하는지 · 잔혹하거나 음란한 내용 혹은 이미지를 과도하게 보도하거나 강조하는지
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범죄와 재난 보도 과정에서 관련된 피해자 및 당사자의 감정이나 피해 가능성을 배려하는지 ·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을 신중하게 보도하는지
		저작권 윤리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적인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· 타 언론사나 기사, 이미지, 영상물 등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하거나 전재하는지 · 개인의 기사, 이미지, 영상물 등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하거나 전재하는지
수용자 요소	10점	창의 및 혁신성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시도로 새로운 뉴스 모델을 제시하는지 · 모바일, SNS 등 새로운 매체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는지 · 콘텐츠의 소재나 구성, 내용이 새롭고 신선한지
		수용자 친화성 (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용자의 참여와 반응이 활발하고 긍정적인지 · 수용자들이 보고, 읽고, 참여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돼 있는지 · 수용자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는지

<별표 7> 부정행위의 유형

1. 중복·반복 기사 전송

- ① 동일 기사 중복·반복 전송 : 원천기사의 일부만 변경해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.
 - (ㄱ) 동일한 기사에 제목만 바꾼 경우
 - (ㄴ) 동일한 기사에 문구를 일부 추가 하거나 문장 순서만 바꾼 경우
 - (ㄷ) 동일한 기사에 방송 캡처화면 등 사진이나 이미지 일부만 바꾼 경우
- ② 카테고리 중복 전송 : 사실상 동일한 기사를 각 포털의 서로 다른 포털 내 뉴스 카테고리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.

2.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

- ① 전체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이 추천 검색어나 자극적 단어를 제목 또는 본문에 삽입하거나, 배경과 같은 색깔을 써서 보이지 않게 삽입한 경우를 의미한다.

3. 관련뉴스·실시간뉴스 영역 남용

- ① '포털사'가 '뉴스콘텐츠제휴' '제휴매체'의 기사 하단에 제공하는 관련뉴스 또는 실시간뉴스 영역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아래와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.
 - (ㄱ) 해당 영역에 기사로 위장된 광고, 홍보를 노출한 경우
 - (ㄴ) 해당 영역에 기사와 무관한 추천검색어 또는 선정적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노출한 경우

4. 기사로 위장된 광고, 홍보

- ① 기사로 위장된 광고, 홍보 전송 : 기사 본래의 정보전달 목적이 아닌 기사로 포장된 광고·홍보 목적이 분명한 기사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, 통상 아래와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.
 - (ㄱ) 일반적인 기사와 달리 기사 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, 업체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, 계좌번호,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경우
 - (ㄴ) 홍보회사, 광고회사에서 작성 또는 제공한 원자료를 거의 그대로 기사 형식으로 만든 경우
- ② 링크 신뢰성 훼손: 기사를 보기 위해 링크를 클릭했을 때, 그 결과가 이용자의 일반적 기대와 달리 상업적 목적이 큰 콘텐츠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, 통상 아래와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.
 - (ㄱ) 링크 클릭했을 때 미리보기 영역에서 보여진 내용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

우

(L) 기사 제목 또는 본문 안에 기사와 무관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삽입하는 경우

③ 가독성 훼손 광고 전송 : 기사를 보기 위해 링크를 클릭했을 때, 매체사 페이지로 이동 후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경우를 의미한다.

5. 선정적 기사 및 광고

① 선정적 기사 및 광고라 함은 '포털사'의 청소년보호정책에 위반하는 문구 와 이미지를 포함한 기사 및 광고를 말한다.

② '제휴매체' 페이지 내 선정적 콘텐츠 및 광고 게재 : '포털사'에 제공된 기사를 클릭해 보여지는 '제휴매체' 페이지에 기사내용과 무관한 선정적인 콘텐츠나 광고가 게재된 경우를 의미한다. 선정적 게시물에 대한 판단은 <별표 9>를 준용한다.

6.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

① 이미 보낸 기사의 URL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혀 다른 내용의 제목 또는 본문의 기사로 수정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.

7. 미계약 매체사 기사 전송(제 3자 기사 전송)

① '제휴매체'가 '포털사'에 '제휴매체'가 아닌 매체사(법인, 개인에 제한을 두지 않음)의 기사(이하 '제 3자 기사'라 한다)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'제휴매체'인 A사가 '포털사'와 제휴하지 않은 B사 또는 A사의 자매회사 등의 '제 3자 기사'를 A사의 기사인 것처럼 우회 송고하여 '포털사' 뉴스에 노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.

8.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

- ① 베껴쓰기: 타 매체사에서 보도한 기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발췌해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.
- ② 이미지 저작권 침해: 타인이 소유한 이미지를 협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.

9.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

- ① '제휴매체'가 '포털사' 최초 제휴 시 협의된 카테고리 외의 기사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.

예) 경제 카테고리로 등록된 '제휴매체'가 연예 카테고리 기사를 사전 협의 없이 전송하는 경우 등

10.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추구

- ① '포털사'에 전송하는 기사를 이용하여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금품(재산상의 이익)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
 - (ㄱ) '포털사'에 노출되는 기사의 삭제 또는 수정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
 - (ㄴ)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'포털사'에 기사를 전송하겠다는 내용의 협박(위해의 고지)
- ② '포털사'와 제휴된 이후 이러한 사실을 빌미로 협찬비나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
- ③ 제 2항에 따른 부정행위 입증의 증거자료는 해당 이해당사자 간의 음성 또는 영상 녹음, 이메일, 문자 또는 SNS메시지, 사진 등을 말한다.

<별표 8> 제재기준

1. 반복 중복 기사 벌점 (1일 기사 송고량 기준)

반복 중복 기사 비율	벌점	비고
1%이상 10%미만	1점	1일(24시간) 기준
10%이상 20%미만	2점	1일(24시간) 기준
20%이상 30%미만	3점	1일(24시간) 기준
30%이상 40%미만	4점	1일(24시간) 기준
40%이상 50%미만	5점	1일(24시간) 기준
50% 이상	10점	1일(24시간) 기준

2.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벌점 (1일 기사 송고량 기준)

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 비율	벌점	비고
1%이상 5%미만	1점	1일(24시간) 기준
5%이상 10%미만	2점	1일(24시간) 기준
10%이상 15%미만	3점	1일(24시간) 기준
15%이상 20%미만	4점	1일(24시간) 기준
20%이상 25%미만	5점	1일(24시간) 기준
25% 이상	10점	1일(24시간) 기준

3. '제3자 기사전송'이 자사의 1일 기사 송고량의 5% 이상인 경우

‘제3자 기사전송’ 비율	벌점	비고
5%이상 10%미만	1점	1일(24시간) 기준
10%이상 15%미만	2점	1일(24시간) 기준
15%이상 20%미만	3점	1일(24시간) 기준
20%이상 25%미만	4점	1일(24시간) 기준
25% 이상 30% 미만	5점	1일(24시간) 기준
30% 이상	10점	1일(24시간) 기준

4. 타 부정행위별 벌점

부정행위 유형	벌점	비고
관련뉴스·실시간뉴스영역 남용	1점	부정행위 유형에 관계 없이 각기 다른 부정행위 5건 누적 시 1점 부과
기사로 위장된 광고, 홍보		
선정적 기사 및 광고 전송		
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		
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(베껴쓰기 등)		
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		
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	5점	건당 벌점제

5. 벌점과 제재

- '제휴매체' 별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며, 12개월 이후 '0'점부터 재 누적한다.
- '뉴스제휴평가위'는 본 규정 제 12조에 명기된 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를 위한 평가 작업을 매월 일(1)회 실시한다.

1) 최초 평가 시

벌점	제재	비고
10점 미만	시정 요청	
1개월 이내 누적 벌점 10점 이상	경고 처분	대외공표, 매체명 비공개
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 이상	경고 처분	대외공표, 매체명 비공개

2) 제재 조치 후 재평가 시

벌점	제재	비고
10점 이상	'포털사' 내 모든 서비스 (24시간) 노출 중단	대외공표, 매체명 비공개

3) '포털사' 내 모든 서비스 (24시간) 노출 중단 후 재평가 시

벌점	제재	비고
10점 이상	'포털사' 내 모든 서비스 (48시간) 노출 중단	대외공표, 매체명 비공개

4) '포털사' 내 모든 서비스 (48시간) 노출 중단 후 재평가 시

별점	제재	비고
10점 이상	계약해지	대외공표, 매체명 비공개

<별표 9> 선정성 판단 정책

1. 성 관련 콘텐츠

구분		상세 내용
노출	적극적 차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기 노출(바디페인팅, 타투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함) - 둔부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경우 - 사람과 유사하게 묘사된 인형이 성기, 음모, 항문, 유두를 노출한 경우 - 여성의 유두/유륜 노출된 경우 - 유두, 성기 노출 없는(모자이크 포함) 여성의 전신 전라
	사안별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정보성 또는 의학적 의도인) 성기 및 유두 노출 실사 UGC - 남성/여성의 성기가 하의 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 - 성적의 의도가 전혀 없는 둔부 노출 - 정상적인 옷을 입은 상태이나 옷 위로 유두의 모양(형태가) 비치거나 도드라진 경우 - 주요부위(성기, 항문, 둔부)의 노출이 없는 남성의 전신전라 - 주요부위의 노출은 없으나, 상의 혹은 하의를 탈의한 경우
성행위	적극적 차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기, 음모, 항문이 노출되지 않은 성행위 - 성기구를 이용한 성행위로 확인되는 경우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적 체벌 이미지 또는 체벌 관련한 UGC -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가슴, 둔부, 성기에 입 또는 손등을 이용한 성행위 - 착의상태이나 성기 부분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성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- 착의상태이나 옷 속으로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
	사안별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정상적인 속옷이나 의상을 입어 성적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- 성기/둔부 등의 신체노출 없이 가학/피학성 성행위 묘사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모자이크 UGC -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UGC - 착의 상태이나 둔부가 비쳐보이거나 노출되어 선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- 착의 상태이나 특정 신체 부분을 클로즈업(부각)하여 성적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

2. 폭력 관련 콘텐츠

구분		상세 내용
살해 상해	적극적 차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간, 동물, 공상의 캐릭터의 피와 출혈을 동반한 절단, 손괴 등 잔인한 살해 - 무방비 상태에서 대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고문 등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내용 묘사 - 인간, 동물, 공상(실존 생명체인 인간, 동물 등을 형상화한 캐릭

		터의 살해
	사안별 검토	- 인간, 동물, 공상(실존 생명체인 인간, 동물 등을 형상화한)캐릭터의 상해 - 물체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- 유혈상태를 보이지 않는 격투

3. 언어 관련 콘텐츠

현장을 전달하는 기사의 경우 저널리즘적 목적으로 현장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사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한다.

구분		상세 내용
노골적 비속어	적극적	- 노골적인 성교 및 성기 표현
	차단	- 노골적인 신체 훼손을 담은 표현
	사안별 검토	- 동물에 표현한 비유 - 신체 대한 비하 표현